

기업경영과 환경법*

이 은 기**

차 례

- I. 들어가며
- II.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규제
- III. 현행 환경관련법상의 기업규제
- IV. 현행 환경법적 규제의 평가
- V. 마치며

【국문초록】

인류생존에 필요한 물품생산을 위한 산업활동, 식량생산을 위한 화학비료나 농기계의 사용, 각종 교통수단의 운행 등은 그동안 화석연료의 사용에 의존해 왔다. 그동안 과도한 온실가스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에 의한 지구환경위기는 지구상 모든 인간에게 인간생활의 모든 문제를 환경문제로 연관시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산업활동에 있어서 기업에 대한 환경규제는 현행 산업 및 환경관련법규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가 규정하는 사업자의 환경적 책무,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가 규정하는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6조의 사업자의 녹색경영 책무 등과 같은 것이다.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환경법상의 환경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국제거래에서 자국 물품에 대한 보호는 물론 환경적 악영향을 줄이기 위

* 이 논문은 서강대학교 서강선도연구그룹사업(기후변화의 경제적 진단과 과제)의 연구비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해서도 각종 국제환경규약 또는 양자간 FTA에서의 환경규제기준의 준수를 요구한다. EU역내 국가에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EU집행위원회가 계속 발표하는 자동차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생산해야 하는 것이다.

어떠한 산업활동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규제나 각종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환경규제는 당해기업의 생산활동에 관해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판매에 대한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고 생산원가의 상승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상실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기업경영에 있어 환경문제를 도외시하고 이기적 이윤추구만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녹색경영은 기업의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 환경정의의 문제와도 관련된 다. 환경경영, 녹색경영은 곧바로 기업의 이윤추구와도 배치되지 않고 부합된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기업경영과 무역에 있어서 환경법적 규제는 이제 피해 갈 수 없는 하나의 조건이다. 이제 환경경영은 기업 윤리경영의 한 내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논문에서 살펴 본 현행 산업 및 환경관련법의 사업자에 대한 각종 환경규제와 지원제도에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다. 다만, 규제위주인 현행법제는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보급·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다 지원·유도적인 법제도 틀로 병행하는 입법적 전환이 필요하다.

I. 들어가며

기후변화로 느끼는 환경위기는 모든 인간에게 어떻게든 지구환경을 위해 인간생활의 모든 문제를 환경문제와 연관시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커다란 용기(容器)로 볼 수 있는 지구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그 내부 문제에 있어 상호의존적이다. 기후문제만 보더라도 육지와 바다 그리고 대기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인류 생존에 필요한 물품생산을 위한 산업활동, 식량생산을 위한 화학비료나 농기계의 사용, 각종 교통수단의 운행 등은 화석연료 없이는 불가능했고 기후변화를 야기했다. 기후변화문제는 한 기업이나 국가의 원인제공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기업 그리고 국가가 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하며 환경적 악영향으로 인한 고통도 전지구인이 같이 겪고 있다.

국제거래에서 환경문제는 자국 물품에 대한 보호는 물론 환경적 악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도 각종 환경규제기준의 준수를 요구한다. 세계무역시장에서 GATT체제에 이은 WTO체제에서 Green Round가 대두된 이유이다.

EU집행위원회는 매년 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강화해 오고 있다.¹⁾ 그로 인해 EU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한국의 자동차 생산업체는 물론 일본, 미국 등 전세계 자동차제조회사들은 EU역내 국가에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생산설비나 생산라인의 일부를 교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산업활동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규제나 각종 제품에 대해 적용되는 환경기준은 기업의 산업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판매에 대한 진입장벽(barrier to entry)이 될 수도 있고 생산원가의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상실로 생산중단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할진대 기업경영에 있어 환경문제를 도외시키고 이기적 이윤추구만을 할 수가 없다. 기업의 녹색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환경정의문제와도 관련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기업경영, 국제거래 등에 있어서 각종 산업 및 환경관련법상 환경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체화되어 있으며, 어떠한 규제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EU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에너지 사용제품에 대한 환경기준을 계속 강화해 왔다. EU집행위는 현행 휘발유와 디젤의 환경기준 관련 지침(98/70/EC)을 대폭 강화하는 신규 지침(2003/17/EC)을 2003년 3월 22일 관보(L76)를 통해 발표한 이래 수차 신차에 대한 환경기준을 강화해 오고 있다. 또한 EU집행위는 TV 등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성 등 환경기준제정을 추진해 왔다. 20개 제품군에 대해 에너지효율성과 여타 환경기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다. EU는 미국보다 더 엄격한 자동차 관련 환경규제를 실시하면서 CO₂배출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EU는 2004년에는 주행거리 1km당 170g까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을 허용했으나 2012년에는 130g으로 낮추는 데 이어 2025년에는 75g으로 대폭 낮춘다. 2006년 기준 한국 수출차의 평균 배기가스 배출량은 164g이었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EU에서 자동차 한 대도 못 판다는 얘기가 된다.<<http://www.daum.net>, <http://www.chosun.com> EU 환경기준 편집기사 참조>.

II.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규제

1. Green Round 그리고 기업과 환경법

국내·국제적 환경규제는 정부, 기업, 소비자 등 각 경제주체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서 이제 환경법적 규제에 대한 대응은 필요불가결하게 되었다.

환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던 시기에는 환경과 무역이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기후변화문제가 세계적 관심사로 등장하면서 국제 무역에서는 WTO를 중심으로 무역과 환경과의 연관성문제가 제기되고 New Trade Agenda의 핵심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는바²⁾, 양자를 국제적 차원에서 통합시키거나 연관시키려는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 결과 국제적 환경보호협약을 앞세워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움직임은 Green Round의 대두로 이어지고 있다.³⁾ Green Round(환경라운드)는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국제협약과 일부 선진국의 개별입법에 의한 무역규제가 증가함에 따라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환경과 무역에 관한 새로운 국제규범을 제정하려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국제적 동향을 말한다.⁴⁾

비단 자동차뿐만 아니라⁵⁾ 다른 공산품 및 광물, 농수산물에 대한 환경규제도 점점

2) 최인 외 6인, 기후변화의 경제적 진단과 과제(서강선도연구그룹 사업신청서), 2011. 1. 31, 14면.

3)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5, 25면.

4) 박군성·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10, 18면.

5) 2007년 기준 선진국에 비해 1-2년 뒤쳐져 있는 국내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선진국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9년부터 엄격한 미국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휘발유자동차 배출가스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경유자동차의 경우 현재 적용되는 'EURO-4' 기준을 유럽과 같은 시기에 'EURO-5' 기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007.9.20.자로 입법예고하여 EUR사전에 제작사의 기술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제작사는 강화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적어도 2010년부터는 극초저공해(Super Ultra Low Emission Vehicle, SULEV) 자동차를 일정비율 이 '판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유차에 적용되는 'EURO-5'는 현행 'EURO-4'에 비해 질소산화물(NOx) 28%, 탄화 수소(HC) 24%, 미세먼지(PM) 92-80%를 저감해야 하는 규제로, 제작사는 선택적 촉매장치(SCR),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매연저감장치(DPF) DP최신 배출가스저감기술을 차량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강화되는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될 경우, 2015년에는 현행 기준을 유지했을 때보다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물질이 약 9.5%(5만8천톤) 저감될 것으로 전망했다.<<http://www.daum.net>

하고 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의 생산, 판매, 소비, 교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다. 각 나라의 환경기준의 차이만큼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상계관세제도, 제품에 대한 환경목적의 부과금, 세금의 차이만큼 국경세로 조정하는 것은 대표적 환경관련 무역규제 사례이다.⁶⁾

환경보전을 위해 취한 조치가 결과적으로 제품의 생산·소비·폐기에 영향을 주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특정제품관련 선진기술을 바탕으로 환경기준이나 규정을 설정하고 수입품에도 같은 규정의 적용을 요구하거나 준수 강제성은 없더라도 물품 수입시 자국의 규격획득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친환경적인 상품에 표지를 부착하는 환경마크제도는 환경친화적인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부분이 있으나, 수출국 입장에서는 수입국의 기준에 맞는 물품을 생산하여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포장폐기물의 감량을 위한 사용량 및 재질을 규제하거나 포장폐기물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회수처리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무역규제적 환경정책으로 볼 수 있다.⁷⁾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은 Green Round의 대두로 인하여 국내 환경관련법규와 국제환경규약상 환경규제는 기업경영자들이 숙지해야 할 경영지침이 되고 있다.

2. 국제무역과 환경법

그동안 국제무역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하는 GATT체제와 WTO체제가 중심구조를 이루어 왔다.⁸⁾ 자유무역주의자들은 자유무역을 세계경제를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편집기사 참조>.

6) 박균성 외1, 앞의 책, 19면.

7) 박균성 외1, 앞의 책, 19-20면.

8)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이전의 체제이다. 제2차 세계 대전 후반기인 1944년 미 뉴햄프셔 주의 브레튼 우즈에서 있었던 브레튼 우즈 회의 후 창설되었다. GATT는 국제협정으로, 조약과 매우 유사하다. GATT는 “무조건 최혜국대우 공여원칙”에 의거, 다자간 교역규범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비차별성을 강조하여, 가장 혜택을 입는 국가에 적용되는 조건(즉 가장 낮은 수준의 제한)이 모든 다른 국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GATT에 참여한 국가는 모든 국가가 참여할 새로운 무역협정을 의논하게 된다. 그러한 매번의 협정과정을 “라운드”라 하는데, 이러한 협정은 회원국들 간에 일정 수준 관세를 낮게 하며, 각 국가 간의 사정이 고려되어 개개 무역품목에 따른 특별관세, 혹은 많은 예외나 수정이 협정내용에 추

발전시켜 더 많은 재원을 지구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⁹⁾ 그러나 환경보호론자들은 지구의 환경보호를 위해 국제무역을 제한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키고자하는 움직임은 1972년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UNCHE)에서 인간환경선언(Declaration on the Human Environment)이후 GATT체제에서도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국제적 관심을 일으키지는 못하였다.¹⁰⁾ 1992년 6월 지속가능한 개발을 범세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국제회의인 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가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되었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구현을 위한 리우선언과 아젠다 21이 채택되었다. 이 회의에서 무역과 환경에 관한 기본입장이 정리되었는데 그 내용은 첫째,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무역규제조치가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적 조치나 위장된 수단을 포함해서는 안 되고 둘째, 국가간 또는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는 가능한 한 국제적 합의에 기초해야 하며 셋째, 환경과 개발분야의 국제활동시 개도국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WTO 창설협정은 ‘본 협정의 당사국들은 무역 및 경제활동 분야에서 그들의 관계가 상이한 경제발전단계에 따른 각각의 필요와 관심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환경보전과 보전수단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상응하는 세계자원의 최적이용을 허용한다고’고 규정하였다.¹¹⁾ 이어 1994년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문’을 채택하고 WTO산하에 무역환경위원회(Commission on Trade and Environment, CTE)를 설치키로 함으로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CTE는 무역과 환

가된다. 1947년의 제네바 라운드는 23개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체결하고, 56개국 대표자들이 쿠바 하바나에 모여 국제무역기구의 헌장에 대한 협상에 착수하였다. 1995. 12. 31. WTO의 창립으로 “GATT 1947”체제는 종식되었다. 1986년부터 협상을 시작해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에 125개국이 참가하여 GATT조약을 대체하기 위한 WTO를 창설하여 향후 20년간 관세 및 수출 보조금 감소를 결의하고 향후 20년간의 수입제한 및 수입상한의 감소, 특허, 상표, 저작권(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강행협정, 국제무역법의 서비스 부분으로의 확장(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그리고 외국 자본의 개방을 선언하였다.<<http://www.daum.net> 무역협정 편집기사 참조>.

9) 노명준, 「신국제환경법」, 법문사, 2003, 379면.

10) 박군성·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10, 18면.

11) 홍준형, 앞의 책, 27면.

경에 관한 1000의제를 채택, 1995년부터 1996년까지 13회의 회의를 갖고 그 결과가 1996년 말 싱가포르 각료회의에 제출되었다. 그 후 WTO/ CTE에서는 무역과 관련된 환경문제를 10개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해 왔는데, 국제적 규범을 도출하기보다 각국의 상이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의제별 구체적 사례 및 경험에 입각한 분석과 토의 위주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¹²⁾

WTO협정도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 특허와 농업분야의 협력사항에서 환경규정(Green Provisions)을 두고 있다. 그와 같은 무역과 환경관련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의 '녹색보호 무역'조치가 늘고 있다.¹³⁾ 무역과 환경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각국의 환경규제와 WTO규정은 충돌가능성이 있다. 선진국들은 환경규제가 WTO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세계 도처에서 무역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녹색보호주의는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 등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형태로 표출되고 있으나, TBT는 WTO규정상 합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보호주의로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와 의무 있는 국가간의 상품거래시 세금부과문제는 환경제국주의논쟁을 피할 수 없으며, 겉으로는 공정무역을 강조하면서 '환경과 노동'을 내세워 자국 산업을 지키는 보호무역 조치가 취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¹⁴⁾

3. 환경관련 무역규제의 구체적 사례

과거에는 환경과 무역이 별개 문제로 다루어져 왔으나, 이제 이 두 가지를 국제적 차원에서 연계시키는 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지구의 생태계 등 환경

12) 박균성 외1, 앞의 책, 19면.

13) 미국은 2009. 6. 26. 하원에서 자국의 수입품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국경세)를 추진하려고 청정에너지안보법안(Waxman-Markey법안)을 의결하였고, 상원에서는 기후관련법안으로 The Clean Energy Jobs and American Power Act(Kerry-boxer법안)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풍력터빈의 70%, 태양열 발전설비의 80%를 자국산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국영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자국산 설비 의무비율을 설정하여 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최인 외 6인, 앞의 보고서, 15면.

14) 최인 외 6인, 앞의 보고서, 16-17면.

보호를 위하여 환경관련 국제협약에 무역에 관한 제한규정을 두는 사례가 늘고 있다. 환경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미가입국 또는 의무불이행국에 대하여 무역규제조항을 넣으며 점점 규제강도가 심화되고 있는데, 몬트리올의정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바젤협약 등이 그러한 경우로 볼 수 있다.

국제거래에서 환경관련 무역규제는 자국이 추구하는 환경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무역을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사례는 1996년 프랑스의 석면과 석면함유제품의 수입금지 사례이다. 프랑스의 석면제품 수입금지조치에 관하여 2001년 WTO항소기구가 내린 판결은 자유무역과 환경보호 간의 우열문제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이다.¹⁵⁾ 위 사건에서 캐나다는 석면포함 상품의 수입을 금지한 프랑스의 법령이 무역의 ‘기술적 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협정) 제2조와 1994년 GATT규정 제3조 및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WTO항소기구는 석면금지법령이 TBT협정의 ‘기술규칙’(technical regulation)에 해당하며 온석면 섬유¹⁶⁾와 PCG섬유¹⁷⁾는 동종상품이 아니므로 1994 GATT규정 제3조 제4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프랑스의 석면포함상품의 수입금지조치가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necessary “to protect human life or health.”)는 1994 GATT규정 제20조 b항에 적합하다고 판시함으로써 항소기구는 이전과는 달리 환경보호를 자유무역에 우선시켰다.¹⁸⁾

15) 노명준, 앞의 책, 386-387면.

16) 온석면(chrysotile asbestos fibres)은 백석면 또는 크리스타일이라고도 하는데 사문석(蛇紋石)의 일종으로 화학성분은 $Mg_3(OH)_4Si_2O_5$ 이며, 소량의 산화철 또는 산화알루미늄을 함유한다. 섬유상 결정을 이루며, 굵기 3-4, 비중 2.5이다. 백색-녹색을 띠거나 백록색을 띠며, 견사광택이 있다.<<http://www.naver.com> 백과사전 참조>.

17) 온석면을 대체할 수 있는 석면으로 온석면과 함께 주로 세멘트 생산에 사용된다. 프랑스에서는 PCG 섬유를 생산하고, 캐나다는 프랑스에 온석면(백석면)을 수출하였다.<<http://www.naver.com> 백과사전 참조>.

18) 프랑스 정부가 취한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의 생산, 수입 및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 캐나다는 동 조치가 GATT 제3조, 제11조 및 TBT 협정 제2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WTO에 분쟁을 제기하였다. WTO패널은 프랑스의 법안은 동종제품에 대한 차별대우로 GATT 제3조 4항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으나, 이는 GATT 의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GATT 제20조 (b)호와 전문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판정하였으나, 항소기구는 온석면의 건강에 위해한 성질을 고려하지 않고 온석면과 PCG 섬유를 동종제품으로 보아 동조치가 GATT 제3조 위반으로 본 WTO패널의 판정을 파기하였다. 결론적으로는 문제의

제2사례는 미국의 멕시코산 참치금지 사건(U.S. Tuna Ban)이다. 이 사안은 멕시코 등 중남미의 어선들이 동부 열대 태평양해역에서 해양포유동물보호법(Marine Mammal Production Act)이 보호하고 있는 돌고래를 해치는 참치잡이 유자망어선을 사용하는 등의 채취방법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미국정부가 이 법에 따라 멕시코산 참치수입을 금지한 것이다.¹⁹⁾ 멕시코가 제소한 이 사건에 대해 GATT패널은 미국의 참치수입금지조치가 GATT 제1조 제1항(수량제한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였다.²⁰⁾²¹⁾

제3사례는 미국의 바다거북보존에 악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채취된 새우 및 새우 관련상품의 수입금지사건(U.S.-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이다.

이 사건에서 바다거북의 보존에 악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새우를 채취한 경우 미국이 이러한 새우의 수입을 금지한 미국공법(Public Law)101-162호 제609조가 GATT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 등은 미국을 WTO패널에 제소하였다. 미국은 1973년 멸종위기에 있는 종에 관한 법(US Endangered Species Act)을 제정하고 미국연안에 서식하는 바다거북을 이 법이 보호하는 멸종위기종에 포함시켰다. 1987년 미국은 이 법에 따라 새우트롤업계가 거북제외장치

조치가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GATT 제20조 (b)항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동 사건에서 항소기구는 GATT 제3조 및 제20조 (b)항을 해석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항소기구는 제3조 4항의 동종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finding that the products at issue are “like”), “상품에 결합된 건강 또는 환경적 위험이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consumer’s taste, especially quality of risk or quantity of risk to human health, in judging the scope of like product in Article 3(4))”는 증거가 GATT 제3조 4항의 동종제품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정하였다. 그동안 WTO는 현재 체제 내에서 점진적으로 진보적인 판정을 통하여 환경론자들의 비판을 조금씩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무역과 환경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GATT 제20조의 개정이나 각료회의의 해석선언을 통하여 양자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http://www.daum.net>, 석면관련 편집기사 참조>.

19) 홍준형, 앞의 책, 26-27면.

20) U.S. Restriction on Imports of Tuna, Report of the GATT Panel(August 16, 1991)30 I.L.M. 1594(1991), 노명준, 전게서, 381-382면에서 재인용. 이에 대해 자유무역주의자들은 환경한 반환경주의자들은 GATT패널이 관련규정을 무역자유화라는 관점에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러한 기준에 따르는 한 환경보호를 이유로 무역제한조치를 사용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하였다. 홍준형, 앞의 책, 26면.

21) GATT 제11조 제2항은 수입제한 금지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환경보호를 위하여 취해진 조치는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

(Turtle exclude device, TEDs)를 사용하여 새우를 채취하도록 하는 규칙을 제정하였다. 1989년 미국은 공법 101-162호 제609조를 제정하고 바다거북보존에 악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채취된 새우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1996년 4월 미 국무부는 미국 국제 무역재판소(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가 1995년 12월에 내린 명령에 순응하기 위하여 개정지침(revised guidelines)을 발표하고 제609조가 모든 국가에서 채취된 새우에 적용하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고 다른 나라들도 미국과 같이 거북제의 장치(TEDs)를 사용하여 새우를 채취하도록 요구하였다.

인도 등 4개국은 이러한 미국의 행위가 GATT(1994)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제소하였다. WTO패널은 미국공법 제609조가 할당제(quota), 수출입허가, 기타조치에 의한 수량제한을 일반적으로 금지한 GATT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미국의 새우수입금지조치가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적 무역제한조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GATT 제20조 b항 전문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 1998년 10월 WTO 항소기구(Appellate Body)는 미국의 새우수입금지조치가 GATT규정에 위반된다는 WTO패널의 판결을 지지하였다.²²⁾ 항소기구는 미국 영역밖에 있는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도 제20조 g항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다고 하여 일국의 영역밖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한조치에 무조건 반대하지 않았다.

WTO항소기구의 이러한 판단은 앞으로 한 나라 밖의 환경보전을 위해 PPMs를 이유로 일방적 무역제한조치를 내릴 수 있는 논거를 부여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PPM방식에 근거한 무역제한조치에 반대하고 있어 항소기구의 이러한 입장은 PPM방식에 의한 무역규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선진국들에 의하여 선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22)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WTO항소기구는 WTO패널과는 달리 미국의 행위가 GATT 규정 제20조b항과 g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검토한 후 제20조 전문의 요건에 해당하는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외국의 생산 및 공정방식(Production and Process Methods, PPMs)에 근거한 무역제한조치를 무조건 불인정하지 않고 미국의 조치에 제20조 g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적 무역제한조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20조 전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미국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미국은 일방적인 금지조치를 취하기 전에 바다거북보호에 관한 다른 나라의 개별적 사정과 정책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적절한 보호조치에 합의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와 양자적 또는 다자적 협상을 게을리하여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자국의 기준을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타국에 강요하였다고 지적하였다. Nancy L. Perkins, "Introductory Note", 119면. 노명준, 앞의 책 386면에서 재인용.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자국의 환경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광물, 공산품이나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사례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각 국의 대응으로 무역분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4. FTA에서의 환경조항 삽입

2008년 체결된 한-칠레 FTA에서는 제8장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서 "생태학적 및 환경적 조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²³⁾, 2010. 10. 6 서명한 한-EU FTA²⁴⁾, 2010년 타결되어 2011. 6. 3 서명하고 비준 전인 한미 FTA에서 볼 수 있듯이 각국 간에 체결되는 FTA에서도 환경조항을 예외없이 두고 있다. 한미 FTA '제20장 환경' 편에서는 제20.1조 보호수준, 제20.2조 환경협정, 제20.3조 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 제20.4조 절차문제, 제20.5조 환경성과달성을 위한 메커니즘, 적용과 집행 20.8조 환경협력, 제20.9조 환경협약의 및 패널절차, 제20.10조 다자간 환경협정과 관계 등으로 환경규제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경향으로 미루어 볼 때 이제 국제거래에서의 무역장벽은 과거의 '관세장벽'에서 '환경규제장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III. 현행 환경관련법상의 기업규제

일반적으로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현행 환경적 규제수단으로는 직접적·규제적 효력을 갖는 명령적·권력적 수단(command and control)과 간접적 규제수단인 경제적 유인(economic incentive)수단을 들고 있다.

23) 한-칠레 FTA 제8장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 제7조(위험평가 및 위생 및 식물위생보호의 적정수준결정)에서 '2. 양당사국은 위협을 평가하고 식물위생 및 위생보호조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이용 가능한 과학적 증거 및 그 밖의 요소를 고려한다 가. 병해충 또는 질병의 유행 나. 병해충 또는 질병의 전지역의 존재 다. 관련 생태학적 및 환경적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http://www.mofat.go.kr> 및 <http://www.fta.go.kr> 참조>.

24) 한-EU FTA의 제5장 식물 및 위생조치 및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노동기준과 환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http://www.fta.go.kr> 참조>.

직접적, 명령적 규제수단으로는 일반적으로 인허가제도, 배출규제(환경기준·배출 허용기준), 신고·등록·표시등 의무부과제도 그리고 형사적 제재²⁵⁾가 있다. 경제적 유인수단으로는 금전지급의무를 부과하는 배출부과금, 과징금, 부담금, 환경세 등 제 규제수단과 최근 논의되는 배출권거래제²⁶⁾를 들고 있다. 그 밖에도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제도로서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ISO14000시리즈), 환경라벨링·환경마크제도가 있다.

이러한 환경보전을 위한 법적 수단들은 각종 산업관련법이나 환경법규에서 구체화되어 관련 사업경영자에게는 '사업활동에 대한 환경적 규제'나 지원제도²⁷⁾로 작동하고 있다. 이를 전 산업부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환경규제와 산업부문별 환경규제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전 산업부문 공통

환경정책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서 산업에 대한 일반적 환경관련 규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는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고 사업자에게 환경적

25) 형사적 제재로는 형법, 개별환경법,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처벌 등이 있다.

26)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3개월 동안 연간 43만대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규모의 1천만 톤이 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였다고 밝혔다. 쓰레기 매립지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이유는 매립가스에 함유되어 있는 '메탄'을 적정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매립가스를 연료로 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청정기술개발체제(CDM)를 통해 쌓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UN의 최종 심의를 거쳐 2011년 10월 중으로 탄소배출권을 발급받을 예정이다. 이번 탄소배출권은 지난해 1차분 탄소배출권 대비 약 2.5배 이상의 규모로 발급될 것이 예상되며, 이를 현재 시세(CO2톤 당 10유로, 1,500원/유로)로 거래할 경우 약 150억원의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CDM사업은 선진국의 기술이나 자본의 참여 없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인 10년간 총 700만 CO2톤(약 1,050억원 상당)이상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여 기후변화대응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http://www.me.go.kr> 참조>.

27)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보급·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장려, 지원제도가 법제화되어 있다.

책무를 과하고 있다. 제7조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사업자의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7조의2 제2항은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판매·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사용 및 폐기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사전예방의 원칙을 규정하고 제3항은 '사업자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제7조의4 제2항은 사업자의 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시책에 대한 협력의무, 제20조는 환경보전을 위한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 또는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 진동, 악취의 발생, 폐기물의 처리, 일조의 침해 및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규제, 제20조의2는 배출허용기준의 예고, 제20조의3은 경제적 유인수단, 제25조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제28조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제31조는 사업자의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제34조는 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등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활동에 대한 다각도의 환경적 규제를 하고 있다.

2011. 7. 21 전면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²⁸⁾ 제30조 제3항에서는 현재 사업자가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이

28) 환경정책기본법의 전면개정이유는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통합 출입·검사 및 환경관련 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현행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규정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은 폐지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적 시책과 환경개선사업의 재원확보·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일 법률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수립·변경 시 공청회 개최 등(법 제14조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통합 출입·검사(법 제30조제2항), 법령 위반사실의 공표(법 제30조제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로부터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교육·홍보 등의 사업 및 기타 환경관련사업을 위탁받아 환경보전협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법 제59조제5항) 등이다. <<http://www.law.go.kr>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참조>.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법령 위반사실의 공표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사업자의 환경법규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는 “환경영향평가”는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하 “환경영향”이라 한다)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이하 “환경보전방안”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함으로써 관련사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같은 법 제3조 제3항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자의 책무, 제7조는 사업자의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제13조 내지 제15조는 사업자의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제21조는 사업자의 평가서의 제작·제출, 제23조는 사업자의 협의내용의 이행의무, 제24조는 사업자의 사후환경영향조사 의무, 제37조는 사업자와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자에 대한 환경규제를 하고 있다.

2011. 7. 21 전면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했던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제도를 흡수, 통합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²⁹⁾

29) 환경영향평가법의 전면개정 이유는 현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같은 목적의 평가제도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평가절차가 복잡하고 일부 절차의 중복으로 협의기간이 장기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여 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여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환경평가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고,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중 행정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며(법 제2조), 환경성검토협의회,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통합하고, 협의회에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며(법 제8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절차를 의무화하고, 평가항목 등을 결정할 때에는 환경적·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계절적 특성변화를 고려하도록 하며,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듣도록 했다(법 제11조).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 결정시 환경적·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계절적 특성변화를 고려하도록 하고, 결정된 평가항목·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조에서는 “녹색경영”을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 제6조는 녹색경영을 위한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³⁰⁾ 제23조는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25조는 정부의 기업에 대한 녹색경영 촉진, 제31조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제33조는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지원, 제41조는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제42조는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제도, 제44조는 관리업체의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고의무, 제46조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7조는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 제53조는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 제55조는 친환경 농림수산의 촉진 및 탄소흡수원 확충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부문별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법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라고 정의하고 제15조는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2. 어업·수산업, 해상운송 부문

어업과 수산, 해상운송 관련기업은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오염방지법, 연안관리법, 수산업법, 항만법, 어촌·어항법, 수산진흥법 상의 각종 환경규제에 따라야 한다.

범위 등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고(법 제24조), 해당 법령에 따라 개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검토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중 하나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법 제50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법 제54조), 환경영향평가사제도의 도입하였다(법 제63조-제65조).<<http://www.law.go.kr> 참조>.

30)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6조는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서 “해양환경”이라 함은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수(海洋水)·해양지(海洋地)·해양대기(海洋大氣) 등 비생물적 환경 및 해양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양의 자연 및 생활상태라고 정의하고, “해양오염”이라 함은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여 해양관련 환경규제범위를 확정하고 있다.

제5조 제2항에서는 해양에서의 개발·이용행위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행하는 자는 해양오염 및 해양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해양기업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7조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을 야기한 자(오염원인자)는 훼손·오염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해양환경의 훼손·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8조(해양환경기준)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고려하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해양환경의 기준을 해역별·용도별로 해양환경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에서는 해상에서 선박의 오염물질의 배출금지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어업, 수산업 기업은 물론 선박에 의한 해상물류운송기업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제32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에서는 선박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중에서 선장을 보좌하여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도록 하여 해양 및 대기 오염방지를 위한 규제를 하고 제41조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제42조(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는 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선박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제77조에서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에 대해 해양오염영향 조사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제116조는 해양환경감시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환경관련 규제사항들은 해양·수산관련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인건비, 오염방지시설설치비, 관리비 등의 부담을 주는 침익적 사항들로서 생산비, 처리

비 등 비용증가를 가져오게 되므로 기업경영전략수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3. 농·축산업 부문

농축산업도 과거의 소규모 자작농에서 점점 기업농으로 변하고 있다. 채소 등 특용작물, 화훼, 과수, 양계·양돈 등 축산 등에서 특히 그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기업지구온난화로 지난 100년간 한반도의 평균기온이 1.5상승(전 지구평균기온은 0.7도 상승)한 결과 농업에도 큰 변화가 오고 있다. 제주도에서만 생육이 가능했던 한라봉, 밀감, 참다래의 산지가 경남, 전남일부지역으로 확대되고 일교차가 커서 사과재배에 좋은 여건이었던 대구 경북지방보다³¹⁾ 강원도 양구 등지에서 재배면적이 늘고 있다.³²⁾ 또한 배는 주산지가 전남 나주에서 경기권(안성·평택·화성) 등으로 주력산지가 북상했고 추위에 약한 복숭아도 경북 영천에서 강원도 원주로 재배지가 확대되고 강원도 양구에서 뮐론까지 나오고 전남 보성이 주산지인 녹차가 강원도 고성에서 시험재배되고 있다. 주요 과일산지가 북상하면서 경남과 전남의 일부 과수 농가는 작물을 수익성이 높은 열대과일로 바꾸고 있다. 전남곡성에서 열대과일 ‘과파야’를 하우스재재로 성공하고 충북 괴산에서는 ‘구아바’재배에 성공했다고 한다.

제주도 소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에 의하면, 연평균기온이 1도 상승하면 기존 농작물의 생육한계선이 직선거리로 100km정도 북상한다고 분석하고 있는바, 한반도의 환경이 제주도는 아열대성, 강원도는 온대성 과수를 재배하기에 적합한 품도로 바뀌어 가고 있어 과일의 개화시기나 수확시기가 앞당겨지므로 농민들이 이러한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³³⁾

31) 한반도 남쪽지방은 여름에 열대야 때문에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날이 많아져 사과가 밤사이에 양분을 축적하지 못해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은 사과가 대구 경북지방보다 강원도 양구 등 북쪽지방에서 더 많이 나오게 되었다. 조선일보 2011년 7월 9일자 B6. 참조.

32) 경북 문경에서 20여년간 사과농사를 짓던 농민이 2002년 강원도 양구로 이전하여 16,000평에 사과과수원을 조성했고 2008년부터 사과를 출하하고 있다고 한다. 앞의 기사 참조.

33) 기온 상승으로 실제 지난 10년 사이 강원도지역의 사과재배면적이 122ha, 배 재배면적이 310ha 증가했음에 반하여 같은 기간 제주도는 10도 이상의 평균기온이 10개월 이상 지속되는 아열대기후로 바뀌었다. 앞의 기사 참조.

이와 같이 기후변화에 따른 경작환경의 변화는 농업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³⁴⁾ 이에 따라 농업관련 환경법 즉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낙농법, 축산법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바, 그러한 계획의 변경도 필요하다. 또한 동법 제6조는 농림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업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현지내보존 및 현지외보존 상태에 있는 농업유전자원의 현황을 조사·수집하여 등재하여야 하는바, 그 등재내용의 변경을 요한다.³⁵⁾ 제7조는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의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보존 가치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고 그 분석·평가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공개내용의 변경도 필요하게 된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는 “친환경농업”을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친환경적 농업으로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제4조는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야 한다는 농업인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제9조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제13조는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34)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농업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미국의 Deschenes, Oliver와 Michael Greenstone(The Economic Impacts of Climate Change: Evidence from Agricultural Output and Random Fluctuations in Weather, American Law Review 97(1), 2007)은 1970-2000년 기후자료와 엄밀한 계량경제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기온이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유의적 상관관계를 추정하여 급세기 동안 미국의 농업이윤은 연간 3.4%늘어날 것으로 예측한 반면, Schlenker와 Roberts(Non-Linear Temperature Effects Indicate Severe Damages to U.S. Crop Yields under Climate Chang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6(37), 2009)는 적정기온과 일조량은 작물재배의 필수조건이지만 평균기온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오히려 작물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보면서 향후 미국 농산물생산은 급세기 말까지 약 67-79%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 최인 외 6인, 앞의 보고서, 24-25면 참조.

35) 농업유전자원 현황의 조사·수집, 농업유전자원 목록의 작성 및 농업유전자원의 보존목록에 등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및 보급, 제17조는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제18조는 친환경농산물의 표시 변경명령, 19조는 농수산부장관 등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한 시설설치자금의 지원, 제21조는 친환경농업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규정하여 농업의 환경보존기능증대와 환경친화적 농업경영을 유도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축산업자는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생활환경의 보전 및 수질오염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8조는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서의 가축사육의 제한, 제10조는 가축을 사육하는 자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는 자의 가축분뇨처리 의무, 제27조는 가축분뇨의 재활용 등에 대해서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자에 대한 환경규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4. 제조업 부문

가.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를 제조하는 기업은 대기 및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법률들에서 규정하는 환경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기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은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원자력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에너지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환경규제를 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제2장에서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배출규제수단으로서 배출허용기준(제16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제17조),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제18조),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제21조), 총량규제(제22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제23조), 방지시설의 설치(제26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제30조), 허용기준초과시 개선명령(제33조), 조업정지명령(제34조), 배출부과금(제35조), 허가의 취소(제36조), 과징금부과(제37조), 위법시설

에 대한 폐쇄조치(제38조), 자기측정(제39조), 환경기술인제도(제40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서는 제조공정은 물론 제작차도 배출허용기준 등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소음·진동관리법 제30조는 ‘자동차를 제작(수입포함)하려는 자(“자동차제작자”)는 제작되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고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대해 규정하여 소음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생산, 판매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5는 수질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수질오염할당사업자에 대하여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 측정기기를 부착·가동 및 측정결과기록보존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4조의6은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4조의7은 오염총량초과부과금에 대해, 제7조는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자·판매자 또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친환경상품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5조는 사업자 등의 공공수역에의 수질오염물질배출금지, 제16조는 유류·유독물·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보관자의 수질오염사고의 신고의무, 제19조는 하천·호소구역 안에서 특정농작물의 경작권고, 제19조의2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농폐수의 배출규제를 위해 제32조에서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제33조에서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제34조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제37조는 사업자의 배출시설 등 가동개시신고, 제38조는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의무, 제38조의2는 사업자의 측정기기의 부착의무, 제39조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40조는 개선명령불이행 사업자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제41조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부과, 제42조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 제43조는 과징금 처분, 제44조는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제58조는 농약잔류허용기준, 제61조는 골프장의 농약사용제한, 제62조는 폐수처리업등록 등의 규정으로서 수질환경보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자

동차제조업자로서는 이러한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환경규제에 따라야 한다.

나. 가전제품 및 음료, 약품 및 화장품 제조업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용기에 담는 음료수, 약품, 화장품등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TV, 냉장고, PC 등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서의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요구하는 용기나 포장재 및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를 피할 수 없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는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제25조는 폐기물처리업을 규정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자원순환”을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5조에서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³⁶⁾ 제9조는 사업자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의무, 제10조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의 1회용품의 사용 억제 의무, 제12조는 특정 제품·재료·용기 등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제13조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14조는 제품, 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 제15조의2는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제16조는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제24조의2는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 제34조의9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제품·재료·용기 등에 대한 환경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다. 화학물질제조업

현재 성인중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³⁷⁾ 제5조(사업자의 책무)

- 36) 제5조 ① 사업자는 제2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원재료 및 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폐기물이 되는 경우에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자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제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재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하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사용, 판매)하는 사업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또는 환경상의 유해와 위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사용저감, 대체물질·기술의 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평가대상물질의 예비등록신청, 제33조는 허가대상물질제조 등의 허가 등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사업자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유럽에서 1990년 6월 발간된 유럽의 기존화학물질목록(European Inventory Existing Chemicals Substances, EINECS)에 등재된 산업용 화학물질 중 1톤 이상 유통되는 물질에 대한 등록, 평가제도를 2006년 12월 통합하여 EU가 REACH규칙³⁸⁾을 채택하였는바, 우리나라도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사전배려원칙에 기한 REACH를 도입, 법제화한 것이다.

5. 건축업

건축법은 제65조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동조 제5항의 위임에 의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공동부령으로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2010.7.1.부터 시행하고 있다.³⁹⁾ 제11조 제2항에서는 일정한 규모의 건축물의 경우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허가시 건축계획서, 기본설계도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도록 친환경건축을 위한 환경규제를 하고 있다.⁴⁰⁾

37) 박지현, 한국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의 WTO협정에의 합치성, 한국환경법학회 제106회 학술대회(2011.7.1) Proceedings, 85-110면 참조.

38) REGULATION(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REACH), 박종원, 화학물질평가·관리의 환경법적 문제, 한국환경법학회 제106회 학술대회(2011.7.1) Proceedings, 10-11면 참조.

39) 친환경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제7조(인증심사)는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하고, 심사내용, 심사점수, 인증여부 및 인증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등급은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또는 일반(그린4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에너지효율성⁴¹⁾이 높은 친환경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업에 대한 환경관련규제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6.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의 처리문제는 NIMBY현상에서 보듯 어느 사회에서나 계층 또는 지역간 침해한 이해충돌적 문제로 대두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유해폐기물처리문제의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환경정책문제에 관한 쟁점과 해법을 환경윤리론이나 환경정의론에서 찾기도 한다.⁴²⁾

가. 일반폐기물처리업

폐기물관리법은 제2조에서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리와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13조는 폐기물의 처리 기준, 제13조의2는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제14조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제18조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24조의2는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제24조의3은 수입폐기물의 처리, 제25조는 폐기물처리업,⁴³⁾ 제27조는 폐기물처리업허가의 취소, 제28조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

40) 구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의 건축과 관련될 수 있는 건축폐기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폐기물 처리업부분’에서 다룬다.

41)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단열시공, 절전형 LED(발광다이오드)형 조명시설, 출입감지센서에 의한 조명 등 건축기법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42) 최봉석 환경법, 청림출판사, 2010, 52면. 환경정의론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최병두, 비판적 생태학과 환경정의, 한울출판사, 2010의 제1장~9장과 Clifford Rechtschaffen-Eileen Gauna-Catherine A. O'Neill, Environmental Justice, Law, Policy & Regulation Carolina Academic Press, 2009 참조.

43) 제25조 제1항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폐기물처리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과징금처분, 제34조는 기술관리인, 제39조의2는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처리명령, 제39조의3은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처리명령, 제40조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처리, 제43조는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분담금, 제46조는 폐기물처리 신고, 제46조의2는 과징금처분, 제47조는 사업자의 폐기물의 회수조치, 제48조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제49조는 조치명령불이행자에 대한 대집행, 제51조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제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나. 건설폐기물처리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건설폐기물”을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을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이라고 정의함으로써 환경규제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정하고 있다. 제21조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제26조는 과징금의 부과정수, 제27조는 재활용을 위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제43조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의 처리의무, 제43조는 방치폐기물의 처리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건설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있다.

다. 방사성폐기물처리업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9조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제10조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⁴⁴⁾ 제5조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발생자 및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공공안전과 환경보전을 도모하고 있다.

44)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신·재생 에너지산업 및 원자력산업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1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녹색산업을 장려하고 있다.

에너지법 제2조에서는 “에너지공급자”를 에너지를 생산·수입·전환·수송·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제4조 제3항은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신재생 에너지산업의 장려와는 달리 화석연료를 이용한 에너지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보급·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라고 정의하고 제4조는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사업 실시의무, 제12조는 지경부장관의 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제13조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지원, 장려하고 있다.

원자력법 제43조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사업 또는 가공사업(변환 사업을 포함한다)을 하는 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제57조에서는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는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에 대해 규정하여 핵연료물질사용업을 업태로 하고 있고 제76조에서는 방사선편기시설등 건설·운영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손해배상법 제2조는 “원자력사업자”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자,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 또는 출항의 신고를 한 외국원자력 선운항자, 가공사업(변환사업을 포함)의 허가를 받은 자,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

정을 받은 자, 핵연료물질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를 받은 자,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기관, 원자력안전전문기관과 원자력관련용역 및 제품생산기관 등이라고 정의하고, “원자력사고”는 원자력손해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하고도 긴박한 위험이 있는 사건을 말한다고 정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원자력사업범위를 확정하고 있다. 제3조는 원자력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제5조는 원자로가동을 위한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조치의무를 규정하여 원자력사업자의 환경적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8. 기타 개별 환경법상 규제

가. 대기부문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규제법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원자력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는바,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환경규제에 따라야 한다.

나. 수질부문

수질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법률로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호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⁴⁵⁾ 하천법, 골재채취법,

45) 먹는물관리법은 먹는물 사업자에 대해 제20조(시설기준), 제21조(영업허가), 제26조(수입신고), 제27조(품질관리인 채용)등의 규정으로 환경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특정다목적댐법, 소하천정비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내수면어업법, 축산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등이 있는바, 수질환경오염 관련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환경규제를 받는다.

다. 토양과 자연환경 부문

토양오염⁴⁶⁾과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법으로는 토양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초지법, 산림법, 사방사업법, 농약관리법, 식물방역법 등이 있는바, 특히 석유류나 화학약품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경영자는 토양오염방지법상의 무과실책임(제10조의3)을 피할 수 없다.

라. 농수산·해양부문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법과 농수산자원의 보호, 친환경농업을 담보하기 위한 법으로는 해양환경관리법, 연안관리법, 수산업법, 항만법, 어촌·어항법, 수산진흥법, 농업 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업육성법 등이 있는바, 농수산업이나 바다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상의 환경규제를 받게 된다.

마. 소음·진동·악취 등 부문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제조업, 위생, 교통, 교육 등에 적용되는 규제법으로는 소음·진동관리법,⁴⁷⁾ 악취방지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도로교통법, 학교보건법 등이 있는바,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장 및 교통 소음·진동, 악취, 위생 등에 대하여 위 법상의 환경규제를 받는다.

46)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에서는 “토양오염”을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47) 공장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호의 공장의 소음·진동배출시설로서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바. 폐기물 부문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규제하는 법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이 있는바, 폐기물처리와 자원재생에 관하여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

사. 산업부문

산업, 기술 및 국토개발을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법으로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특별회계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도시공원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토지수용법 등이 있는바, 모든 산업활동에 대하여 환경적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⁴⁸⁾

아. 기타

이 밖에도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보급·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환경관리공단법, 한국자원재생공사법,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환경보건법, 환경교육진흥법 등에서 에너지개발⁴⁹⁾, 환경보건이나 환경교육, 환경관리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48) 우리나라 녹색경영의 한 사례로서, 고리1호기 원전부터 2009년 UAE원전수출에 이르기까지 한국형 원전을 선도해온 현대건설(주)가 2011년 2월 업계 최초로 녹색경영시스템(Green Management System, GMS)인증을 취득하고 탄소정보공개(CDP)를 도입계획을 세우고 정부목표보다 2년 앞서 2018년까지 온실가스를 30%이상 감축한다고 선언하는 등 기술혁신보다 친환경경영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2011.7.6. 조선일보, 조선경제 B10, 그린BIZ참조.

IV. 현행 환경법적 규제의 평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상 각종 환경규제는 대부분 규제 위주로 규정되어 있다. 그 결과 기업경영을 규율하는 산업관련법이 환경법에 지나치게 종속되게 되어 부정적 규제영향을 초래할 우려도 적지 않다. 이는 현대행정에서의 정부규제철폐나 규제완화라는 새로운 행정패러다임과도 배치된다.

그러나 Green Round의 대두에서 보듯 지구온난화 등 지구환경문제의 극복이라는 전지구적 규제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경영이나 국제무역에 대한 환경법적 규제는 불가피하다.⁵⁰⁾

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지구환경의 보전을 담보하는 기업경영에 대한 환경법적 규제는 가능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절한 기술기준(technology standard)이 규제항목별로 세밀하게 마련되어 각 국의 입법지침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어려운 과제이며 현시대의 과학기술수준과 각국의 경제수준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모든 산업부문에서 녹색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존 환경규제가 산업 및 환경관련법에서 규제위주였던 것에서 탈피하여 현행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보급·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율규제나 지원·유도 행정을 더욱 늘려 이를 병행하는 입법적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9) 한국은 2010년 GDP 1달러를 높이기 위해 전력 0.58kw를 사용했다. 이는 OECD 평균의 1.71배, 일본의 3배라고 하는데,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에너지환경문제도 녹색성장의 주된 정책대상이 되어야 한다. 조선일보 2011. 7. 18. A38, 해외시론, 후카가와 유키코, '에너지 수입 줄이는 게 안보대책' 참조.

50)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규제의 원칙) 제3항에서는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V. 마치며

이제 환경규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존재하기 어렵게 되었다. 환경경영, 녹색경영은 기업의 이윤추구목적과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에 부합된다. 국내 기업경영은 물론 국제적 무역거래에 있어서 환경법적 규제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여건이 되었다. 기후변화방지를 위해 이제 녹색경영은 윤리경영과 책임경영의 한 내포인 바, 그 개념은 이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도 도입되어 있다. 윤리경영과 책임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이며 그 한 축으로서의 녹색경영은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불가결하다.

다만 현행법에서의 환경규제가 규제위주이나 향후 더욱더 지원·유도행정을 병행하는 방식으로의 입법적 변화도 요구된다. 규제완화라는 현대행정의 패러다임에 따라 규제 일변도의 입법에서 탈피해야만 규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미래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책무이기도 하다.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이제 기업경영에 있어 환경법적 규제를 '규제' 자체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인간 생존의 조건'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소비주체인 소비자뿐만 아니라 산업주체인 기업의 녹색경영은 의무화되었다. 그러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우리의 산업 및 환경관련 법과 국제환경규약에서 사업자 및 물품거래에 대한 각종 환경규제와 지원을 통하여 충분히 읽고도 남음이 있다.

참고문헌

-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0.
- 노명준, 「신국제환경법」, 법문사, 2003.
-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10.
- 이순자, 「환경법」, 법원사, 2010.
- 최병두, 「비판적 생태학과 환경정의」, 한울, 2010.
- 최봉석, 「환경법」, 청목출판사, 2010.
- 최 인 외 6인, 기후변화의 경제적 진단과 과제(서강선도연구그룹 사업신청서),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2011. 1. 31.
-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5.
- 박지현, 한국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의 WTO협정예의 합치성, 한국환경법학회 제106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1. 7. 1.
- 박종원, 화학물질평가·관리의 환경법적 문제, 한국환경법학회 제106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1. 7. 1.
- Clifford Rechtschaffen·Eileen Gauna·Catherine A. O'Neill, Environmental Justice, Law, Policy & Regulation, Carolina Academic Press, 2009.
- Dieter Helm(Editor), Climate-change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Agathe Van Lang, Droit de l'environnement,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2007.
- <http://www.daum.net>
- <http://www.naver.com>
- <http://www.law.go.kr>
- <http://www.fta.go.kr>

[Abstract]

Corporate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Law

Lee, Eun-Gi

Humans have relied on fossil fuels to produce necessities for their survival from chemical fertilizers and agricultural machinery for food production to factories and transportation. In the course of human activities, they have produced enormous greenhouse gas emissions, which has led to climate change. The environmental crisis triggered by climate change has become an imminent challenge to everyone living on earth, and thereby made them think of any and all problems they face in relation to the environment.

With respect to Industrial activities in Korea,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enterprises are specified by environmental laws. For example, Article 5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dictates obligations of business operators, and Article 16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stipulates permissible emission levels of air pollutants emitted from air pollutant emission facilities. Without abiding by the foregoing environmental regulation, no one is allowed to operate any business governed by the laws. In addition, many countries require observ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the international trade in order to protect domestic products and minimize negative influences on the environment. To export cars to a EU member country, for instance, the cars must be met by the tailpipe emissions standards established by the EU Commission.

As such, regulations on greenhouse gas emissions or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manufactured products have significant impact on the business activities of related companies. The regulations may either serve as a barrier to entry into the industry, or increase manufacturing costs which may undermine companies' competitiveness and eventually force them to stop the production.

Those who operate businesses should not blindly follow their own interest, ignoring environmental issues. Although green management has become a

buzz word in the corporate management, it cannot be left solely to the market. This is also associated with ethical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justice.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green management do not contradict companies' profit-seeking activities, but closely relate to them. Internationally as well as domestically, observing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is a prerequisite to corporate management and international trade. Thus, environmental management has become a significant part of ethical corporate management. This has been sufficiently recognized and discussed by this paper that examined current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on business operators.

주 제 어 지구기후변화, 기업경영, 국제거래, 환경규제, 녹색경영

Key Words global climate change, corporate management,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al regulations, green management